

---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미화원 직무 및 안전교육**

---



일 시 : 2015. 4. 28 (화) 11:00

장 소 : 기획상황실

**서대문구**  
(청소행정과)

# 직무교육 자료

(2015. 4. 28)

## 가 로 청 소

### 가. 가로청소 작업 및 근무시간 준수 철저

- 1일 3회 이상 담당구역 청소 철저
  - 근무시간 : 1차(05:00~08:00), 2차(09:30~12:00), 3차(13:30~16:00)
- 가로수 보호받침대 밑의 담배꽂초, 잡쓰레기 등 청소 철저
- 중앙분리대, 교통섬, 나들목부분, 가로녹지대, 고가도로 밑 부분 노면차량 청소가 불가능한 지역 청소 강화 (교통사고 등 안전 주의)
- 담당구역내 보도육교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철저
- 담당 구역내 전신주, 벽 등 불법광고물 수거
- 모아진 쓰레기(토사)는 녹지대, 가로수 주변, 도로변에 방치 금지
- 도시미관 저해요인 정비
  - 가로휴지통 쓰레기 수시 수거(파손된 휴지통 발견시 즉시보고)
  - 가관점, 분전함, 공중전화 부스에 부착된 침지류 제거 및 등 주변 청소 강화
  -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 사체는 신속히 처리 후 청소행정과로 연락
- 쓰레기 수거작업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 나. 도로변 빗물받이 관리

- 가로청소시 상시점검
  - 빗물받이에 낙엽 나뭇가지 등 이물질 즉시 제거 수해예방

# 안전교육 자료

## 1. 안전사고 예방수칙

- 교통사고 예방
  - 각종 안전장구(안전모, 근무복 등)를 반드시 착용한 후 작업
  - 교통안전수칙 준수(무단횡단 엄금 등)
    - 특히 새벽시간대 음주운전차량, 과속차량 등의 난폭운전에 각별히 주의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동할 경우 교통사고 특별 유의
    - 음주운전 절대 금지, 안전장구 필히 착용 및 교통수칙 준수
- 작업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수거작업 중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유의
  - 가로청소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유의
  - 우천시 작업중 미끄러짐에 주의

## 2. 근무기강 확립

-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 환경미화원의 의무
    -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근무복 및 안전장구 착용
    -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급된 근무복 및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 ※ 안전장구 착용여부 및 안전수칙 준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서대문구 환경

## 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 의거 징계조치

### ○ 금지 행위

-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
- 차등 수집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 폐기물 무단 소각 및 투기행위
- 근무시 음주행위
-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기타 직장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재활용품 개인적 유용행위 절대금지(적발시 엄중문책)

### ○ 주민 제도

- 담당구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등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내 집·내 점포 앞 주민 스스로 청소하기
  - 폐기물 감량화, 1회용품 사용 자제 등 주민실천사항 홍보

### □ 근무시간 준수

- 근무시간내 담당구간 이탈금지 적발시 근무지 무단이탈로 근무규칙에 의거 징계조치

#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경고	정 직					해고
			1일	2일	3일	4일	5일	
발생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							1회
	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							1회
	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							1회
	도급행위						1회	2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						1회	2회
	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				1회			2회
월단위	지 참	1회	2회	3회	4회			5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행위		1회	2회	3회			4회
	품위 손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장비관리 불철저	1회	2회	3회	4회			5회
	수거 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누적)	1회	2회	3회	4회			5회
	무게 결근		1회	2회	3회			4회
	복장 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년단위	근무 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중 주민 등에게 행패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자			1회	2회			3회
처분 등의 기준	<p>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 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경고처분 년 8회 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 이상 : 해고  다. 정직회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7일 이상 : 해고</p> <p>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0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 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p> <p>3. “년”, “월” 은 통상 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p>							